인권의 공정한 기준에 대한 리해

로 정 혁

인권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학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문제이다.

인권의 기준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져야 미제와 반동들이 국제무대에서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인권》소동의 범죄적목적을 정확히 가려보고 단호히 짓부셔버릴수 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인권의 공정한 기준에 대하여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공정한 인권기준으로 됩니다.》(《김일성전집》제94권 294~295 폐지)

인권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 야 할 자주적권리이다.

자주적권리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제일생명이다. 사람에게 자주적권리가 없으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있을수 없다. 사람은 자주적권리를 가질 때에만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으며 사람답게 살아나갈수 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가지고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권의 참다운 체현자는 인민대중이다. 인권을 요구하는것은 인민대중이며 인권을 행사하고 향유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인권의 기준은 인민이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하는데 있다.

인민이 좋아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는다는것을 의미하며 인민이 좋아하지 않는다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런 견지에서 인권의 공정한 기준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라고 말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는 모든 사물현상의 진리성을 가르는 기준이며 혁명실천의 지침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문제를 보고 대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생활에 구현해나갈 때 현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인권의 기준에 관한 문제도 오직 인민대중과의 관계속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의 견지에서 해명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실현되여 인민이 좋아하게 되면 그런 나라에서는 인권이 보장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무시되여 인민이 좋아하지 않게 되 면 그런 나라에서는 인권이 유린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가 아니면 인권이 짓밟히고 침해당하는가 하는것을 재는 자막대기, 인권보장과 인권유린 을 가르는 척도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만이 될수 있다.

지난 시기 인류는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제기된 인권의 보장과 보호문제를 국내적범 위에서 벗어나 국제적범위에서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왔다.

그 과정에 노예매매를 금지하고 소수민족을 보호하며 녀성들의 권리를 보호할데 대

한 부문별인권협약들이 체결되였다. 그후 인권의 국제적보호문제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세계인권선언이 나오고 일련의 국제인권규범들이 채택되여 인권의 국제 적보호의 법률적기초들이 마련되였다.

그러나 인권과 관련한 국제법에서도 인권의 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였으며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인권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원만히 반영하였다고는 볼수 없다. 이것은 결국 인권과 관련한 국제법이 인권의 공정한 기준으로는 될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국제법뿐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나라의 인권관련법률제도나 인권정책도 인권의 공정한 기준으로 될수 없다. 인민대중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운명을 개척해나가며 매개 나라들이 력사와 전통, 관습과 풍습, 사회제도와 사회발전수준, 내세우는 로선과 정책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어느 한두개 나라가 자기의 기준을 모든 나라들에 강압적으로 내리먹이려고 하여서는 안된다.

세계에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발전된 나라와 덜 발전된 나라는 있을수 있지만 모든 나라들은 다 평등하며 자기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갈 권리를 가지고있다. 그런것만큼 자기 식의 기준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려는것은 그자체가 명백한 주권침해행위이며 인권유린행 위로 된다.

그러나 오늘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저들의 가치관에 기초한 《인권기준》을 정하고 그 것이 마치도 세계적인 공통기준이나 되는듯이 떠벌이고있으며 여기에 다른 나라들의 인 권실태를 비추어 맞지 않으면 《인권침해》요, 《인권유린》이요 하면서 걸고들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저들을 《인권옹호자》, 《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면서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진보적인 나라들,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인권유린국》이라는 딱 지를 붙여 비방중상하고있으며 지어는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침공도 서슴지 않고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무고한 인민들과 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비인간 적으로 박해하며 그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까지 짓밟는 제국주의자 들과 반동들은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인권의 옹호자 가 아니라 인권의 유린자이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는 가혹한 인권유린행위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부르짖는 《인권옹호》라는 말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파렴치한것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식가치관, 서방식가치관에 기초한 인권개념이 다른 나라들에 적용될수 없으며 더우기 그것을 정치적목적에 리용하거나 나라들사이의 관계발전의 전제로 내세우는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볼수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사회주의정권이 적대분자들에게 적용하는 권력행사를 마치 인권을 유린하는것처럼 비난하는것은 어리석은 소동이다.

사회주의정권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세력과 요소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는 것은 인권유린이 아니라 철저한 인권옹호이다.

원래 사회주의정권이 실시하는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 인으로서의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권력기능이다. 그런것만큼 인민대중이 주권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정권은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온 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보위하며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정 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반제자주적인 나라 들에 대한 군사정치적 및 경제적압력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면서 온갖 파괴암해책동 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조건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칼날을 더욱더 날카롭게 벼려 적대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여야 한다.

오늘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를 힘으로 압살해보려는 저들의 시도가 실현될수 없게 되자 있지도 않는 우리 공화국의 그 무슨 《인권문제》를 꺼들어대면서 반공화국《인 권》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감히 《인권문제》를 내흔들면서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헐 뜯고있지만 진짜 인권유린자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인권》의 간판밑에 우리 공화국을 어째보려고 하는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들고나오는 《인권옹호》라는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과 지배주의적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이다.

인민의 조국인 우리 공화국, 일심단결의 우리 사회에 대하여 그런 허망한 궤변으로 비방중상하려드는것은 언어도단이며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격분을 자아낼뿐 추호도 용납 될수 없다.

우리 나라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인격과 자주적권리가 실질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차별없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물론 로동과 휴식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인민대중을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권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있으며 그것을 침해하는 자 그마한 현상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 가 철저히 보장되고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 인민들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람차고 존엄높은 삶을 담보해주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제도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생활하는것을 더없는 긍지로, 커다란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는 그어떤 《인권문제》가 존재할래야 존재할수 없다.

미제가 인권교살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감싸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반미감정과 반미투쟁을 무마시키며 다른 편으로는 저들의 《인권기준》을 강요하여 우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반공화국압살책동을 합법화하려고 꾀하고있지만 그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것과 같이 철면피하고 가소로운 행위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다른 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하면서도 그것을 《인권옹호》의 구실밑에 정당화하려고 책동하는 제국주의 자들과 반동들의 《인권》소동을 혁명적인권공세로 짓뭉개버리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